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개요 및 예정일정

- 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833-1번지 일원
- 규모: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7층 1개동 총 188세대
- 문의전화 063)547-1144

■ 일정계획(예정)

구분	예정일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08. 06(금)	www.김제검산이지움.com
모델하우스 개관	2021. 08. 06(금)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1070-10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 08. 17(화)	인터넷 청약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21. 08. 25(수)	청약홈(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함.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장소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신청	2021. 08. 17(화)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21. 08. 25(수)	- 스마트폰 앱

■ 당첨자 선정 유의 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은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제시) 거주자

② 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 외의 전라북도 거주자 순위로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에 대한 개별 통지 및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8. 0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점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102㎡이하	전용면적 135㎡이하	모든면적
김제시 및 전라북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기관 추천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보주택 비치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세대원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국외 거주지: 국외 거주기간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및 해당 세대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0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주택형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84A (예비)	4 (4)	2 (2)	2 (2)	2 (2)	4 (4)
84B (예비)	1 (1)	1 (1)	1 (1)	1 (1)	1 (1)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는 예비당첨자입니다.

※ 상기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